

**투자위험등급 :**  
**3등급**  
**[중간 위험]**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맥쿼리 1억만들기고배당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맥쿼리 1억만들기고 배당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맥쿼리 1억만들기고배당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협회코드 28125)
2. 집합투자기구 분류: 투자신탁,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증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4.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macquarie.co.kr/mim](http://www.macquarie.co.kr/mi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작 성 기 준 일 : 2014년 9월 11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4년 9월 22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홈페이지 참고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자는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간이투자 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0.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기본운용전략

##### 채권부문의 투자

- ①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합니다. 우량채 중심의 매수후 보유를 기본으로 하되, 추가이익전략을 추구합니다.
- ② 신용등급은 국공채와 A-이상등급의 채권에 투자하고, 동일만기대비 저평가종목, 동일 신용등급 대비 저평가된 종목 등을 선별하여 투자합니다.

##### 주식부문의 투자

- ①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30%이하를 주식에 투자합니다. 고배당 종목 위주와 내재가치가 우수하고 저평가된 가치주에 투자하여 종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저평가된 가치주 및 시장평균 이상의 배당수익과 주가 변동성을 고려한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상대적으로 위험대비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투자전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 ② 종목분석에 입각한 Bottom Up approach (상향식방식)을 기본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Top Down(하향식방식)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Top Down Approach\*

개별주식 보다는 전체적인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자산배분결정이 이루어 지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거시적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어떤 종류의 산업, 국가의 주식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하여 자산을 배분하게 됩니다.

\*Bottom Up Approach\*

개별주식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특정한 경제상황, 경제 사이클 보다는 기업 자체의 전망을 가지고 주식이 선택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 ③ 종목선택 전략

수익 및 가치 모델을 활용한 정성적/정량적 분석 및 기업방문, 외부 애널리스트 초청 세미나 등 지속적인 리서치 활동을 통해 종목을 발굴합니다.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저평가된 가치주 및 시장평균이상의 배당수익과 주가변동성을 고려한 종목 선정

시장상황 또는 특정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된 우량주를 편입합니다.

시장 및 업종대비 상대적으로 우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종목은 전략적으로 편입합니다.

\* 비교 지수(벤치마크) : KOSPI 30% + NPS 5년이하 채권지수 65% + call 5%

NPS채권지수 : 국민연금을 위해 개발된 채권시장을 대표하는 국내채권인덱스로 2004년 6월30일부터 산정되었으며, 신용등급BBB+이상의 채권을 대상으로 발표되는 지수.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2) 위험관리

### ① 투자 유니버스 관리

당사의 기준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만 유니버스에 편입될 수 있으며, 특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니버스 이외의 종목은 투자하지 못합니다.

### ②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

투자대상자산을 법과 규정 등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중 투자하지 않고 분산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축소합니다.

### ③ 신용평가관리

당사의 기준 및 규약에서 정한 투자대상 및 신용등급 이상의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합니다.

## (3) 적극적인 매매전략

이 투자신탁은 시장상황에 따른 신속하고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므로 빈번한 매매로 인하여 매매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매매비용의 증가는 투자신탁의 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수익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 -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입니다.

##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관련법령은 이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신탁재산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등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 및 어음의 가격은 이자율등 여타 거시경제지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및 어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 및 어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부도 등의 위험	주식, 채권 및 어음 등의 경우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금의 회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채권 및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고위험자산인 주식에 30%이하를 투자하여 위험등급 기준이 3등급에 해당하는 중간 수준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채권형보다는 높지만, 주식형보다는 낮은 기대수익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며, 국내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에 대해 잘 이해하는 투자자에 적합합니다.

위험등급 및 투자자유형은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의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험등급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비고
1등급	매우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고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②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존형(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초과)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③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2등급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고위험자산에 최대 50%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li> <li>②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존형(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이하)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③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과 유사한 집합투자기구</li> <li>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3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고위험자산에 5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③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보다 낮은 집합투자기구</li> <li>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4등급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5등급	매우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li> <li>②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 기준에 따른 상품위험등급분류 기준입니다. 이와 달리, 판매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한 판매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권요시 상품위험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회사의 상품위험등급은 판매회사 직원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년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펀드수	운용중인 다른 자산 규모 (억원)	
윤영진	1978	차장	-	-	現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주식액티브팀 대신자산운용 주식운용팀장 유진투자증권 AI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대우증권 투자분석부 고려대 통계학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종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

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7. 투자실적 추이-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3.01.23 ~14.01.22	12.01.23 ~13.01.22	11.01.23 ~12.01.22	10.01.23 ~11.01.22	09.01.23 ~10.01.22
맥쿼리 1 억만들기고배당 1(채.혼)	2.75	4.19	3.45	11.39	17.04
비교지수	1.63	4.39	2.33	10.47	17.22
맥쿼리 1 억만들기고배당 1(채.혼)A	1.61	3.03	2.30	8.19	-
비교지수	1.28	5.54	3.56	8.62	-
맥쿼리 1 억만들기고배당 1(채.혼)C	1.26	2.57	1.79	10.34	17.04
비교지수	1.28	5.54	3.56	11.10	17.22

주 1) 비교지수 : KOSPI 30% + NPS 5년이하 채권지수 65% + call 5%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마지막 수익률 즉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 II 매입, 환매관련 정보

###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가입자격	판매수수료
종류A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납입금액의 0.5% 이내
종류C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
종류C-e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자	-
종류C-i	집합투자기구 및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제13호 내지 제16호, 동 조 제3항 제3호, 제10호 내지 제1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100억 이상을 매입하는 개인, 500억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	-
종류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 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 되는 경우	보유기간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종류A	종류S	종류C	종류C-e	종류C-i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5%이내	-	-	-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	환매시
환매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주1) 후취판매수수료는 3년 미만 환매시 부과 됩니다.

2) (선취·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종류A	종류S	종류C	종류C-e	종류C-i	
집합투자업자보수	0.5000%	0.5000%	0.5000%	0.5000%	0.5000%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6000%	0.2500%	0.9000%	0.7000%	0.0500%	
신탁업자 보수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일반사무관리보수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기타비용	0.0085%	0.0082%	0.0082%	0.0082%	0.0082%	-
총보수 및 비용	1.1285%	0.7782%	1.4282%	1.2282%	0.5782%	-
증권 거래비용	0.0974%	0.0888%	0.0888%	0.0888%	0.0888%	-

\* 판매회사의 보수율은 매년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 2010년 5월 3일부터 2011년 5월 2일 까지 : 1.147%

나. 2011년 5월 3일부터 2012년 5월 2일 까지 : 1.094%

다. 2012년 5월 3일부터 2013년 5월 2일 까지 : 1.041%

라. 2013년 5월 3일 이후 : 0.90%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미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의 비용은 종류C 수익증권의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3.01.02 ~ 2014.01.01]
-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미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의 비용은 종류C 수익증권의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3.01.02 ~ 2014.01.0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A수익증권	168	419	689	1,460
종류C수익증권	149	465	804	1,759
종류C-e수익증권	128	401	694	1,527
종류C-i수익증권	60	190	331	742

종류S수익증권	81	255	444	989
---------	----	-----	-----	-----

- 주1) 투자가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가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종류A수익증권과 종류C수익증권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종류S 수익증권은 수익증권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 되지 않음)

## 2. 과 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증권 신고서 및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환매 절차

### (1)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

	다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macquarie.co.kr/mim">www.macquarie.co.kr/mim</a>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	---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 (2) 매입 및 환매 절차

-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17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나)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다)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가)17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나)17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다)환매대금은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III      요약 재무제표

(단위: 원, %)

항      목	대차대조표		
	제 10기 ( 2014.01.01 )	제 9기 ( 2013.01.01 )	제 8기 ( 2012.01.01 )
운용자산	31,674,512,666	41,725,618,573	53,593,778,403
증권	31,644,226,957	41,667,400,312	53,574,890,112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30,285,709	58,218,261	18,888,291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24,835,176	357,507,308	756,747,535
자산총계	31,899,347,842	42,083,125,881	54,350,525,938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60,692,441	45,345,875	374,562,928
부채총계	160,692,441	45,345,875	374,562,928
원본	30,631,723,471	39,885,281,073	52,748,907,733
수익조정금	-195,537,864	-368,715,009	-532,541,700
이익잉여금	1,302,469,794	2,521,213,942	1,759,596,977
자본총계	31,738,655,401	42,037,780,006	53,975,963,010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0기	제 9기	제 8기
	2013.01.02 ~ 2014.01.01	2012.01.02 ~ 2013.01.01	2011.01.02 ~ 2012.01.01
운용수익	1,302,956,139	2,520,201,591	1,762,931,928
이자수익	849,807,082	1,357,323,077	2,605,173,045
배당수익	98,463,176	139,904,740	226,893,165
매매/평가차익(순)	354,685,881	1,022,973,774	-1,069,134,282
기타수익	1,659,425	3,958,061	1,555,810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2,145,770	2,945,710	4,890,761
당기순이익	1,302,469,794	2,521,213,942	1,759,596,977
매매회전율	160.07	179.47	219.86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